

- 이 추록은 『2026 임팩트 세법학 I·II』 제21판 1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임팩트 세법학 I 권 제 21판 제1쇄(유은종 저, 2026.3.10.퍼냄)
 - 임팩트 세법학 II 권 제 21판 제1쇄(유은종 저, 2026.3.13.퍼냄)
- 이 추록은 출간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2026.2.28.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영
 - 2026.3.3.에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

SECTION 01 2026 임팩트 세법학 I (1쇄)

1.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14	하 7	전액 납부 납부한	전액 납부한
1-55	상 7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2009. 6.23.이.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2009. 6.23.이다.
2-32	상 12	자산성에	자산성이
3-18	상 1	01	02
3-20	상 12	골드뱅킹	골드뱅킹
3-120	하 4	가입 요건에	가입 요건에
3-131	하 12	령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3-134	상 11	4) 신탁 수익권	<4그룹> 신탁 수익권
4-48	하 1	하며, 납세담보를	하며, 금전 등의 납세담보를
4-69	상 15	상속 등기 등을 함께 있어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4-92	하 7	거래소에 상장될 것	증권시장(유기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
4-102	상 12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삭제)
4-113	상 2	사업부분별로	사업부문별로

1. 정오사항

면	행	증전의 내용	고칠 내용
1-45	상 15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1-126	하 3	①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①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2-10	하 9	1당	1당
4-44	상 13	(라) 위 (가)부터 (다)까지	(라) 위 (가)부터 (다)까지 외의
4-57	하 7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하 2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4-58	하 6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하 2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4-59	상 3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4-81	하 2	40%(상장법인 및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
4-83	상 4~5	주식을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20%) 미만으로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4-86	상 1	(1)의 ② 또는 (1) ③의㉠에	(2)의 ② 또는 (2) ③의㉠에
	상 4	(1)의 ③에	(2)의 ③에
4-87	상 1~2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자산증여액을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함)을
4-88	상 18	산입한다.	산입한다. 다만, 위 (2) ②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105	하 7	이월과세액을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4-107	하 7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4-136	하 4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고향사랑·
4-137	상 1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정치자금·고향사랑·
4-176	상 5	②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	②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191	상 16	195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 p.4-57 하15~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해 주세요.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함)에 대한 금액

$$\text{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times \begin{cases} 400\text{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 \text{증가한 경우 700만원} \end{cases}$$

◆ p.4-58 상2~9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해 주세요.

A + B + C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B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C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 p.4-58 상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설계

		공제액(단위:만원)			
		증소(3년)		증건(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그 외 상시근로자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 p.4-73 하6~7행의 ④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해 주세요.

- ④ 주식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추록은 『2026 임팩트 세법학 I·II』 제21판 2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임팩트 세법학 I 권 제 21판 제2쇄(유은종 저, 2026.4.8.펴냄)
 - 임팩트 세법학 II 권 제 21판 제2쇄(유은종 저, 2026.4.8.펴냄)
- 이 추록은 출간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임팩트 세법학(2쇄)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4-92	하 7	거래소에 상장될 것	증권시장(유기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

2. 임팩트 세법학II(2쇄)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45	상 15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4-57	하 7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하 2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4-86	상 1	(1)의 ② 또는 (1) ③의㉠에	(2)의 ② 또는 (2) ③의㉠에
4-86	상 4	(1)의 ③에	(2)의 ③에

◆ p.4-57 하15~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해 주세요.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함)에 대한 금액

$$\text{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times \begin{cases} 400\text{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 \text{증가한 경우 700만원} \end{cases}$$

□ p.4-58 상2~9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해 주세요.

$$A + B + C$$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B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C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2026 임팩트 세법학 I·II 추록(1쇄·2쇄 공통) ③

유은종 지음 | JDI BOOKS 출간
2026년 4월 27일 발행

- 이 추록은 『2026 임팩트 세법학 I·II』 제21판 1·2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임팩트 세법학 I 권 제 21판 제1쇄(유은종 저, 2026.3.10.퍼냄)
 - 임팩트 세법학 II 권 제 21판 제1쇄(유은종 저, 2026.3.13.퍼냄)
 - 임팩트 세법학 I 권 제 21판 제2쇄(유은종 저, 2026.4.8.퍼냄)
 - 임팩트 세법학 II 권 제 21판 제2쇄(유은종 저, 2026.4.8.퍼냄)
-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1쇄·2쇄 공통 추록,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2026.4.21. 개정)

SECTION

01 임팩트 세법학 I (1쇄·2쇄 공통) 개정사항(2026.4.21.개정)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조특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추가사항

▣ p.2-49 하5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 세부사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1. 익금불산입 특례

내국법인(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함)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및 의제배당금액)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ext{익금불산입액} = \left[\text{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text{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times \frac{\text{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세법상 장부가액 적수}}{\text{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right] \times 10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함

2. 배당 가능한 유보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위 3)의 ①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및 의제배당금액)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2. 자녀세액공제 :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3-100	상 14	8세 이상의	13세 이상의

▣ p.3-100 하8행과 하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위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 9세 이상
- ②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 10세 이상
- ③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 11세 이상
- ④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 12세 이상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2026년 과세기간부터 2029년 과세기간까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래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개정이유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8세 미만' 아동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법률 제21489호, 2026.3.20.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현행 '8세 이상'에서 2030년까지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출생일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017년 생 아동은 2029년까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p.4-42에 3번을 추가해 주세요.

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조특법 제23조의2)

【취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한 것임□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함)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음]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및 의제배당금액)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배당 가능한 유보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및 의제배당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차입금 이자의 익금불산입 제외

위 (1) 및 (2)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text{익금불산입액} = \left[\text{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text{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times \frac{\text{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세법상 장부가액 적수}}{\text{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right] \times 10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함

❑ p.4-146에 18번과 19번을 추가해 주세요.

18.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26)

취지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1) 적용 요건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국외상장주식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야 한다.

- ①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할 것
- ② 위 ①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사실이 없을 것

(2)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위 (1)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text{공제금액} = \text{①} \times \text{②}$$

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 ㉠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에서 같음)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의 100%
- ㉡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의 80%
- ㉢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의 50%

②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하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함)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3)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① 납입한도가 5,000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② 다음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 ㉠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소득세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 「소득세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사후관리(양도소득세 납부)

위 (1)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거주자가 위 (4)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27)

취지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등을 신설한 것임

(1) 적용 요건 및 공제금액의 계산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의 금액을 아래 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①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5%에 상응하는 금액
- ②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2) 파생상품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